

운영규정의 개요

1.기본정보

기관명	일송재가노인복지센터	대표	김경일
설치일자	2022.12.15	급여종류	방문요양 재가급여
소재지	군산시 조촌로 15. 세영빌딩401		
전화	063-452-1469	팩스	063-452-1468
이용대상	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		

2.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①이용정원: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.
②이용자의 모집방법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 기관홈페이지, 대상자 방문상담,유선상담,전단지배포, 지인소개,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,

3.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
계약기간	①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②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계약해지	①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장애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재장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
신원인수인 권리	①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②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③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,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신원인수인 의무	①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
배상책임보험	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(서비스)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.

4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 참조	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.
---------	---------------